

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요령

기업결합 신고 위반 사례

2019. 6. 18.

공정거래위원회
기업결합과

#1 기업결합신고서 작성 요령

기업결합 신고서 작성 TIP!

- ❖ 신고서 첨부서류는 **기재요령**을 **준수**하는 **범위 내**에서 **자유롭게 변형**하여 **작성** 가능
- ❖ 신고내용은 **6하 원칙**에 따라 **구체적**으로 작성
- ❖ **간이 신고/심사** 대상 여부를 먼저 **파악**
- ❖ 시장상황 등은 동종 상장업체의 **사업보고서** 활용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주식취득(또는 소유)의 신고서

신고 유형⁽¹⁾ 일반신고 간이신고

주식취득(또는 소유)의 신고서					신고 유형 ⁽¹⁾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신고	
신 고 인	회사명 (또는성명)	대표자 성명		(한글) (한자)	설립일		
	주소				상장일		
	사업자 번호 ⁽³⁾			연락처 (대리인)	담당자 :	(반드시 기재)	
					전화 :		
	재무상황 ⁽⁴⁾ (단위:백만원)	납입자본금			자본총계		
		경상이익			당기순이익		
자산총액 (기업집단전체)		()		매출액 (기업집단전체)	()		
				국내매출액 (기업집단전체) ⁽⁵⁾	()		
주요사업							
상 대 회 사	회사명	대표자 성명		(한글) (한자)	설립일		
	주소				상장일		
	재무상황 ⁽⁴⁾ (단위:백만원)	납입자본금			자본총계		
		경상이익			당기순이익		
		자산총액 (기업집단전체)	()		매출액 (기업집단전체) ⁽⁵⁾	()	
					국내매출액 (기업집단전체) ⁽⁵⁾	()	
주요사업							
주 주			주식 소유비율 (%)		총취득금액	취득일(계약일) ⁽⁸⁾	
			취득 전	취득 후			
	신고인 관련	당해신고인					
		특수 관계인	계열회사 ⁽⁶⁾	(특수관계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)			
	회사 외의 자 ⁽⁷⁾						
		계					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첨부서류

1. 일반신고의 경우

가. 신고회사의 주주현황(신고일 현재 기준)

구분		주주	성명 또는 명칭	소유주식수	주식소유비율(%)
신고인관련	특수 관계인	동일인			
		계열회사			
	회사외의자				
		계			
기타	법인				
	개인				
	계				
합계					100.00

주 1) 계열회사, 회사외의 자, 법인,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%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
 주 2)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(다만,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)

나. 상대회사의 주주현황(신고일 현재 기준)

구분		주주	성명 또는 명칭	소유주식수	주식소유비율(%)	
					취득전	취득후
신고인관련	특수 관계인	동일인				
		계열회사				
	회사외의자					
		계				
상대회사관련	특수 관계인	동일인				
		계열회사				
	회사외의자					
		계				
기타	법인					
	개인					
	계					
합계					100.00	100.00

주 1) 계열회사, 회사외의 자, 법인,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%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
 주 2)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(다만,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)

❖ 결합당사회사의 지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

✓ 동일인 외 자연인은 5% 미만 소유자의 경우

-○○○ 외 ○명(특수관계인)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다. 계열회사 현황 :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,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, 소재지, 주요업종만 기재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	설립일	상장일	주요업종 (국내매출품목)	납입자본금	자본총계	자산총액	매출액 (국내매출액)	당기순이익	주요주주(%)
합계									

주1)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

주2)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

주3) 금융·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,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

주4) (국내매출품목) 및 (국내매출액)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

주5)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(다만,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)

❖ 위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, **회사명·주요업종·매출액·주요주주 현황**만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도 무방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라. 관련시장 현황(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주요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작성 불필요)

- (1)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: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·첨부
- (2) 주요품목의 주요 특성, 기능 및 용도 (중요)
- (3) 주요품목 관련 경쟁상황 : 회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

(1) 품목명 :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기준(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함) 상위 3개 품목별로 각각 작성하되, 3개 품목에 대한 제조공정, 특성, 용도, 가격 등 제품설명을 기재(다만, 「기업결합 심사기준」 Ⅱ. 9의 “혼합형 기업결합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위 1개 품목만 작성하되, 그 밖의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과 전년도 매출액만 기재). 다만, 신고인과 상대회사가 동일한 품목(용역포함)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(중요)

(2) 당해제품 매출액 :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및 수출 구분 없이 당해제품의 전체매출액을 기재

- ❖ **주요품목: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**
 - ✓ 주요품목 3가지에 대한 제조공정, 특성, 용도, 가격, 판매방식 등을 설명
 - ✓ 단, 결합당사회사가 **동일한 품목**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품목도 **추가설명**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마. 기업결합의 개요서(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)

- (1)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
- (2) 기업결합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
- (3)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
- (4)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및 그 사유
- (5)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
- (6)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

❖ 기업결합의 **실체**를 파악할 수 있도록 **구체적**으로 작성(★)

✓기업결합의 내용 : 기업결합 진행절차(계약, 거래·소유 구조 등)을 설명

✓기업결합 사유 : 기업결합 **목적**을 설명(수평, 수직, 혼합 유형이 드러나게)

✓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: **기업결합 심사기준 III. 참조**

✓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: **형성/미형성**(지분관계, 임원선임권 등 고려)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마. 기업결합의 개요서(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)

- (1)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
- (2) 기업결합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
- (3)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
- (4)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및 그 사유
- (5)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
- (6)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

✓**상품시장** : 결합당사회사가 **겹치는 품목** 또는 **원재료 의존 관계**에 있는 품목

-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
-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인식

* 겹치거나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는 품목이 없다면 주요 품목

✓**지리적 시장** : 국내시장, 지역시장, 세계시장

- 수출, 수입 정도
- 상품의 특성(상품의 부패성, 변질성, 파손성)
- 원가에서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관세율
-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인식
- 지역제한, 인허가 사항 등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주요품목의 <u>수급등</u> 시장상황					
회사명					
품목명 ⁽¹⁾		당 해 제 품 매출액 ⁽²⁾	(국내) (수출)	표준산업분류번호 (5단위기준)	
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⁽³⁾					
기업결합당시의 2년전 현황			기업결합당시의 직전년도 현황		
사업자명	매출액	시장점유율	사업자명	매출액	시장점유율
(1)			(1)		
(2)			(2)		
(3)			(3)		
(수입) 계			(수입) 계		
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					
국내·외 진입장벽 ⁽⁴⁾			수입제도		
○ 법적·제도적 진입장벽여부 :			○ 수입제한여부 :		
○ 지역제한 여부 :			○ 최근 5년간 수입비중 :		
○ 최근 5년간 진입사례 :			○ 실행관세율 ⁽⁵⁾ : (관세명 :)		
관련 자료·통계의 출처 ⁽⁶⁾					

- ❖ 시장 획정한 **품목별로 표형식**으로 작성
- ❖ 시장별 경쟁상황 작성(표에 대한 설명)
- ❖ 시장점유율 : 판매액, 거래량, 생산량, 생산능력 등 기준
* 관련 시장의 **통상적인 거래 관행**에 따라 산출
- ❖ 시장점유율 **출처** 명기
- ❖ 수직결합의 경우 **원재료 수급 의존도** (경쟁사 포함)

#1-1 주식취득 신고서

- (7) 기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작성 (시장 상황 설명에 포함)
 - (가)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, 점유율, 가격 및 생산능력
 - (나) 신고회사 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(관련시장 현황 주요품목 설명에 포함)
 - (다) 기업결합 완료후 예상되는 소유 및 지배구조, 재무구조 (결합개요에 포함)
 - (라) 기업결합 주요단계에 대한 설명, 기업결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내역
 - (마) 관련시장에서의 원재료 의존관계등의 수직적 결합정도(당사자, 경쟁자) (시장상황 설명에 포함)

❖ 첨부서류

- 바.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(계약서, 주권교부증,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) 1부
- 사. 임원겸임계획서 :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및 소유 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, 신고인 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,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,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내용 등을 기재
- 아.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(등기부 등본: 당사회사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, 감사보고서 : 상장회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, 외국회사는 외국법률에 의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제출하여야 함)

#1-2 임원겸임 신고서

임원겸임 내용	겸임자 성명	신고회사에서의 직 위	상대회사에서의 직 위	임원겸임일

나. 임원현황 : 아래양식으로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

임원성명	직위	임원겸임 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			임원겸임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
		회사명	직위	겸임일	
	(임원직위)		(원회사 직위)		(특수관계인 여부)

❖ 상대회사 **임원겸임 현황**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

✓ 상대회사의 임원을 다른 회사 몇 명이 어느 직위를 겸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제출

☞ 상대회사의 임원 총 0명 중, 0명을 신고회사가 겸임하고 0명을 他 회사가 겸임하는지

❖ 입증자료(임원선임 관련 **이사회 의사록** 등)는 반드시 제출

#1-3 합병 신고서

합병후존 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	회사명			대표자 성명	(한글) (한자)	설립 일자	
	주소			연락처 (대리인)	전화 : 팩스 :		
	재무상황 ⁽⁴⁾	납입자본금		자산총액			
	주요사업						
합병계약일		합병등기일		합병금액	(계약서에 기재된 금액)		

- ❖ 합병등기일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일자(사전신고의 경우 예상 등기일)
- ❖ 합병금액 :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금액
- ❖ 합병비율 :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비율
- ❖ 첨부서류: 합병 계약서 등

#1-4 영업양수 신고서

영업양수내용	형 태 ⁽⁶⁾		양 수 대 상	양 수 금 액	영업양수계약일	대금지급완료일
	영업의 양수·임차					
	영업용 고정 자산의 양수	(O)	(OO사업부문 관련 자산 일체)			
	경영의수입					

❖ 양수대상 : 간략하게 기재(구체적인 대상은 별첨 서류에 기재)

* 대부분 영업양수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음

❖ 대금지급완료일 : 사전신고의 경우 계약서상 예상기일

❖ 첨부서류: 양수도 계약서, 사후신고의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 등

#1-5 회사설립 신고서

예 정 주식인수내용	주 주		예정주식 소유비율 (%)	총취득금액	회사설립참여 의결일	주식대금 납입기일	
	신고인 관련	당해 신고인					
		특수 관계 인	계열회사 ⁽⁷⁾	(특수관계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)			
			회사외의자 ⁽⁸⁾				
계							

- ❖ 주식대금 납입기일 : 사전신고의 경우 **계약서상** 예상기일
- ❖ 첨부서류 : 회사설립 입증자료(**의사록, 계약서**), **신설회사 사업계획서** 등

#1-6 간이신고서 보조자료

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

간이신고사유 ⁽¹⁾							
기업결합사유 ⁽²⁾		(경영합리화, 상대회사와의 업무관계, 재무적 투자 ... 등 결합 목적 기재)					
신고회사 주주현황 ⁽³⁾				상대회사 주주현황 ⁽³⁾			
주 주 명		주식소유비율(%)		주 주 명		주식소유비율(%)	
						취득전	취득후
신고 인관 련	당해 신고인			동일 인관 련	동 일 인		
	계열회사	(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)			계열회사	(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)	
	회사외의 자				회사외의 자		
	기타				기타		
계열회사 현황 ⁽⁴⁾							
회사명	설립일	주요업종 (국내매출품목)	납입자본금	자본총계	자산총액	매출액 (국내매출액)	주요주주(%)
			(국내 상장사의 경우 생략)				

❖ 간이신고 : 특수관계인 간, 유동화전문회사, PEF, 선박투자회사 설립, 1/3미만 임원겸임

* 간이신고 사유는 간이심사 사유와 구분 필요

❖ 계열회사 현황 : 회사명, 주요업종, 자산총액, 매출액 및 주요주주 현황만 작성해도 무방

#1-6 간이신고서 보조자료

신고회사 주요 품목 ⁽⁶⁾					
품목		품목		품목	
품목명	매출액 ⁽⁶⁾	품목명	매출액	품목명	매출액
(주요품목명)		(주요품목명)		(주요품목명)	
상대회사 주요 품목					
품목		품목		품목	
품목명	매출액	품목명	매출액	품목명	매출액
(주요품목명)		(주요품목명)		(주요품목명)	
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⁽⁷⁾					

- ❖ 주요품목: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작성
- ✓ 단, 결합당사회사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품목도 추가

#2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사례

#2-1 PEF 설립 참여

- A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B, C, D사와 공동으로 **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(PEF) 설립**에 참여하기로 의결함
 - PEF 설립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**최다출자자**에게 신고의무가 있음

- A사는 **출자금 납입기일**까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음
 - * B,C,D사는 대규모회사



- **회사설립의 경우 상대회사들 중 한 개의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!**
 - A사 75백만원 출자 →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9백만원

#2-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자

■ A사는 ○○시 **하수처리시설**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인 B사를 **설립**

• B사 지분: **A사 50%**, C사 20%, D사 20%, E사 10%

■ C, D, E사는 B사 설립 후 B사에 대한 **임원선임권** 각 1명씩을 행사

* A, C, D, E사는 대규모회사

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임원겸임은 신고 대상!

• A사 신고의무 **無**, C, D, E사는 신고위반

#2-3 회생절차 중인 사업자

- B법원은 14.4.18 A사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, 14.11.10 A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
 - C사는 동 회생계획 확정안에 따라 B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B사 지분 37%를 취득

- 동 회생계획 확정안 상 신주의 효력발생일(기업결합일)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(14.11.10)의 다음날인 14.11.11
 - 그러나 대규모회사인 C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음

-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
 - C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 수 차례 개최된 관계인 집회를 통해 A사의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음

#2-4 유상증자 참여

■ A사(대규모회사), B, C사는 D사(비상장)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계약

• 계약상 D사 지분 비율 : B사 80.3%, A사 15.3%, C사 4.39%

* B사의 전년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2,000억 원 미만

■ B, C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D사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함

• A사만 정해진 날짜에 지분을 취득하여 D사 지분 38.62%를 보유

* B, C사의 주식 인수일은 불확실



■ A사 : 과태료 부과

• 여러 회사와 동시에 주식 취득시에는 타회사 취득일정 등에 주의!

#2-5 임의적 사전심사 후속절차

■ A사는 B사 지분 52.13%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

• A사는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없음을 통보 받음

* A사는 대규모회사

■ 그 후 A사는 B사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(본신고)

• 그러나 A사는 기업결합 신고 2일 전 B사에 주식 대금 지급

■ A사 : 과태료 부과

• 임의적 사전심사 후속으로 정식신고(본신고) 필요

#2-6 이행금지 의무 위반

■ 계열회사인 A, B, C사(대규모회사)는 D사 지분 52% 취득하기로 계약하고
사전신고

• 기업결합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 의결

* 의결일 : 'XX.3.11.

■ 그 후 A사 등은 의결서 통지 전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이행행위 완료

* 주식대금 납입일 : 'XX.3.18., 의결서 통지일 : 'XX.5.20.

■ A, B, C사 : 과태료 부과

•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결과 통지 이후에
이행행위를 하여야 함(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)



**“기업결합 신고서 작성,
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”
(문의: 044-200-4368~4370)**

감사합니다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